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이순우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공유재산 우선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 규정(안 제6조)
-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 2월 16일 법인으로 설립됨.
-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지원사업)는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와 더불어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예산지원)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라는 표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와 “사회복지사업의 육성”을 포괄적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표창)는 협의회 회원 중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안 제7조(지도·감독)는 구청장이 협의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를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또한,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협의회와 사회복지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이순우 · 차인영 · 이성수 · 최인순
최봉희 ·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 명: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라.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마. 공유재산 우선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 규정(안 제6조)
- 사. 사회복지협의회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